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217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7. 1.
- (3) 회 부 일 : 2024.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 ----- ----- -----.

할 수 있다. ③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u>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 -----. ④·⑤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2.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1의2.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복지지원 제공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중앙센터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여,¹⁾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개정안은 각 시·도에 지역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국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가 설치되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전달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²⁾

□ 다만,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한다는 특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도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경우에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센터의 설치·운영도 동시에 의무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임.

□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센터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센터를 구별하기 위하여 각각 광역지역센터와 지역센터로 약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앙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2023.12.20.)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신중검토 의견 제시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논의되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시·도에 지역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291억 원(연평균 58억 2,000만원)으로 추계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 운영(안 제9조)	5,763	5,791	5,820	5,849	5,878	29,100	5,820

주1): 본 추계 결과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위탁을 받아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수행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의 내용과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하였고, 시 · 군 · 구가 설치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수용)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및 국비 지원을 통한 장애조기개입 및 개인별 통합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법안 취지에 공감

- 지자체(시·도)에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과 중앙정부의 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을 요구 중
- 또한 기재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조회(24.6.27., 장애인서비스과-3155호) 및 기재부 담당자에 온메일 발송(24.7.3.) 등을 통하여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미회신
- 21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시·도 의무 설치 및 국고 지원 근거 마련에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유지

문 의 처
02)6788-5502